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산운용지침 (IPS)

2012. 2.

고 용 노 동 부

목 차

1. 개 요	1
2. 자산운용관련 법령	3
3. 자산운용의 목적·원칙	4
4. 자산운용체계	5
5. 자금운용 계획 수립	7
6. 적정 유동성 규모 추정	10
7.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12
8. 자산배분 정책	14
9.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18
10. 위험관리 정책	21
11. 성과평가	24
12. 감사 및 공시	26
13. 주식투자 시 의결권행사	27
14.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29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 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 자산운용의 원칙)와 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규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자산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함을 목표로 한다.
- 본 지침은 기금관리주체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 본 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써 임금채권 보장기금 운용 관련 각종 지침, 원칙 및 기준 등을 보완한다
- 본 지침은 기금자산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 본 지침은 자산운용의 투자정책, 투자목표, 투자지침 및 성과평가 원칙을 제시한다.

- 본 지침은 자산운용에 관한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금자산 운용원칙 및 방향을 전달함으로써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기금의 개요

- 기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위 지급하는 체당금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1998.7.1 최초로 설치하였다.
- 기금의 주된 재원은 법정부담금, 변제금, 자산운용수입 등이며, 이를 체당금 및 반환금 지급, 무료법률구조, 체당금 조력지원 및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 부문에 운용하고 있다

자산운용관련 법령

2.1 자산운용관련 법령

- 기금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적용을 받고 있다.

자산운용의 목적·원칙

3.1 자산운용 목적

-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에 대한 보장제도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한다.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며, 노동정책, 금융정책을 비롯한 기타 정부정책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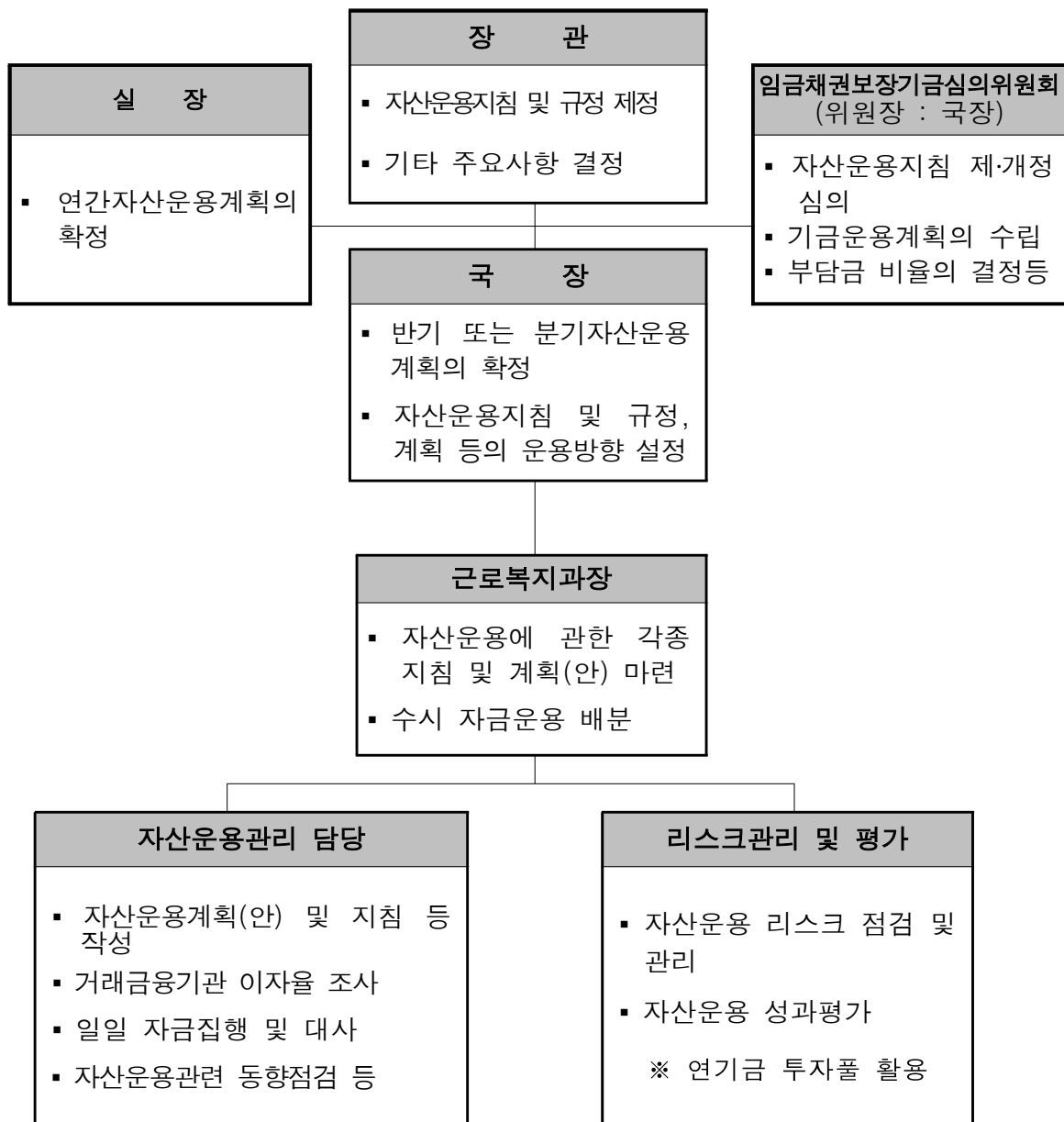
3.2 자산운용 원칙

- 기금의 자산은 국가재정법 제63조에 의거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 1) 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안정성의 원칙)
- 2)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자산 운용계획에 반영한다(유동성의 원칙)
- 3) 경제여건과 주어진 허용위험한도 내에서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운용한다(수익성의 원칙)
- 4) 기금의 설치목적 및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하여 공공성을 도모한다(공공성의 원칙)

4

자산운용 체계

4.1 자산운용 조직체계 및 관장사항



4.2 자산 운용조직과 역할

□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운용 관련 사항의 자문을 받기 위한 「여유자금 자산운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기금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근로개선정책관으로 한다.(상세구성은 별지와 같다)

○ 심의사항

-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자산운용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근로복지과장으로 한다.(상세구성은 별지와 같다)

○ 자문사항

- 여유자금 자산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유자금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금운용 계획수립

5.1 자금운용 계획수립

-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연단위로 수립하고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 자금운용계획은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선정, 금융기관별 자산배분 기준, 운용기간과 운용상품의 종류 및 투자제한사항 등 자산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적정 단기자금 규모 및 중장기 자금 규모를 추정토록 수립하여야 한다.

5.2 여유자금의 분류

- 여유자금은 다음과 같이 자금성격에 따라 단기자금과 중장기 자금으로 분류된다
- 단기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만기 1년 미만 자금을 말한다.
 - 1) 현금성자금 : 만기 1개월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금으로서 자금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수시입출금식 계정자금을 말한다.

2) 유동성자금 : 만기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금으로서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환매성 있는 자산에 투자된 자금을 말하며 기금의 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중장기자금이라 함은 만기 1년 이상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단기 자금과 공자기금 위탁금을 제외한 여타 자금으로서 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비교적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5.3 적정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 운용

□ 여유자금 관련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수입 및 지출 항목의 규모, 속성, 시기 등을 분석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방법을 결정한 후 미래에 발생할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의 규모를 추정하여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산정한다.

□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시 당해연도 단기자금 및 중장기 자금 규모를 자금운용 전략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전년도 12월 말잔 규모와 당해에 조성되는 총 규모를 합산하여 총 운용규모를 도출하고 총 운용규모에서 당해의 기간별 운용 규모를 뺀 여유자금을 추정한다

2) 여유자금 규모에서 적정 유동성(버퍼) 규모는 현금성 자금 또는 유동성 자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3) 여유자금에서 적정 유동성 규모를 제외시킨 규모는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한다

4) 자금배분안은 운용규모에 따라 설정한다

- 5) 적정 유동성 규모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운 자산배분 규모 및 비율을 적기에 개정하여 수치로 명시한다

5.4 전략적(목표) 자산배분안 도출

- 단기자금은 운용기간에 따른 만기별 배분안을 설정하되 적정 유동성 자금의 만기도 고려하여 추정한다
- 중장기 자금은 기금의 운용정책과 전략을 반영하여 전략적 자산 배분안을 도출한다

적정 유동성 규모 추정

6.1 적정 유동성 규모

- 적정 유동성 규모란 당해 연도 사업대기성 자금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Buffer)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대비하고, 기금운용의 기본목표인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모를 말한다

6.21 적정 유동성 규모 추정

- 적정 유동성 규모는 과거(3년~5년) 자금 수지자료를 통해 월별 “계획 순지출 대비 실제 순지출 오차(음수 <->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목표관리기간을 1년으로 한 일정 신뢰수준(90~99%)하에서 부족분(순지출)을 커버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T개월(1월~12월)간의 기간별 추가 유동성*(유동성 Buffer) 규모를 더하여 추정(Cashflow at Risk)하며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유동성 위험 관리 신뢰수준: 99%→2.33σ, 95%→1.65σ, 90%→1.28σ

- 1) 기금의 과거 자금 유입과 지출의 추세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을 파악한다

- 2)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여 일정 확률로 준비해야 하는 적정 유동성 규모의 목표수준 (Target Level)을 설정한다
- 3) 사업 환경을 고려해 적정 유동성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그 규모를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 4) 향후 1년내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는 여유자금에서 일부를 적정 유동성 규모로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자금은 중장기로 운영한다

□ 목표수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1) 기금의 유동성 위험(지급불능상태)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2) 유동성 자금의 과다 보유로 인한 기금의 수익률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7.1 목표수익률

-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의 목표치”로서 자산배분안이 충족해야 할 요구수익률이며 기금의 사업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질가치 보존 이상의 수익률을 말한다
- 본 기금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자산운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우선하고 수익성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를 지향한다
-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목표수익률을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 1) 단기자금의 목표수익률은 단기자금의 평균 투자기간을 대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로 설정한다
 - ※ CD91일물 유통수익률(91일 만기 CD(양도성 예금증서)의 수익률)
 - 2) 중장기 자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향후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수익률로서 장기적으로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통한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므로 “예상물가상승률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예상 수익률 중 높은 것”으로 설정한다. 다만,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연기금투자풀에서 제시하는 “국고채 1년+a* 수익률”은 자산운용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목표수익률로 설정할 수 있다

* 위험자산 투자비중 × 위험프리미엄

7.2 허용위험한도

- 허용위험한도는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 (수익률 감소)에 대한 수용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 기금은 자금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위험 및 시장위험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위험 종류별로 적정한 통계적 기준에 따라 허용위험한도를 산출하여 관리한다.

7.2.1 유동성위험의 허용위험 한도

- 유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단기자금으로 운용할 적정 유동성 규모 및 중장기 자금의 규모를 설정하여야 한다. 적정유동성 규모의 경우 95% 신뢰수준하에서 12개월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7.2.2 시장위험의 허용위험한도

- 기금 운용에 있어 단기자금 및 중장기자금 모두 “1년간의 Shortfall Risk≤5%”를 만족하는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 Shortfall Risk : 특정한 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을 말하며, 기금은 자금운용으로 인해 원금을 미달할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자산배분 정책

8.1 자산배분의 원칙

- 기금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및 당해연도의 자금수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 동일한 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인 경우 수익성을 우선하고, 수익성이 동일한 경우 위험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되, 금융기관 평가순위, 예치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산예치한다.
- 각 자산군별로 목표투자비중을 정하고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 대처 등을 위해 그 기준하에 허용범위를 설정한다.

8.2 자산운용목표(방향)

- 적정한 단기자금 확보
 -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한 단기자금(유동성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균형있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구성
 -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여 확정금리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구성한다.

- 체계적인 위험관리
 - 자산종류별로 투자한도, 손실, 위험한도, 중도해지기준, 투자제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 연기금 투자풀 활용으로 전문성 부족 보완
 - 기금운용 전문인력, 전문지식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해서는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한다.

8.3 투자대상 자산군 및 상품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투자 가능한 자산군 및 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의 예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국가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국채, 지방채, 회사채, 수익증권, 출자증권, 주식)의 매입으로 한다.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은 원칙적으로 위탁운용하며 투자 대상 상품군은 다음과 같으며, 자산운용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연기금투자풀을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 1) 제1금융권(시중은행)에의 정기예금, RP, MMDA 등
 - 2) 제2금융권(증권회사 등)에의 수익증권(채권형, 채권혼합형 등), ELS 등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 4) 기획재정부의 연기금 통합펀드(연기금투자풀)
 - 5) 실물펀드(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을 포함한다) 등 대체투자 및 해외펀드(단, 자산군 및 투자지역, 통화 등을 달리하는 fund of funds 형태의 재간접투자에 한한다)

8.4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 제1단계 : 적정 단기자금 규모 도출

- 최근 3~5년간의 자금수지 분석을 통하여 95% 신뢰수준하의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도출한다.

□ 제2단계 : 경제상황분석

- 과거의 자산군(물가상승율, 확정금리형 상품, 국내채권, 국내주식)별 시계열 데이터 및 벤치마크(BM)수익률을 분석하여 현재의 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는 합리적 가정하에 자산군별 기대수익율 및 변동성을 예측한다.

□ 제3단계: 목표수익율과 허용위험한도 설정

- 목표수익율: 3.84%

- 단기자금: CD91 일물 예상수익률 → 3.56%

- 중장기자금: 국고채 1년 + α^* → 4.0%

- * 위험자산 투자비중 × 위험프리미엄

- 허용위험한도

- 단기자금: shortfall Risk ≤ 5%

- 중장기자금: shortfall Risk ≤ 5%

- ※ 각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수익율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5% 이하'로 통제

□ 제4단계 : 자산배분(안) 검토 및 설정

- Monte carlo simulation에 의거 선택가능한 자산배분(안)을 도출하여 검토한다.

- 경제여건,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자산배분(안)을 설정한다.
- 제5단계 : 자산군별 허용범위 설정
-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군별 허용범위를 설정한다.

8.5 자산배분 및 허용범위

구 분	허용범위 (Range)	2012년도 자산배분안			2011년 자산배분	
		최소	목표비중(%)	최대	계획(%)	실적(%)
단기자금	정책적	정책적	12.0	정책적	20	7
확정금리	±20	32.8	52.8	72.8	26	29
채 권	±10	23.0	33.0	43.0	51	65
주 식	±2.5	-	2.2	4.7	3	5.0
총 계			100		1. 100	100
총 계			100		2. 100	100

* 기대수익율과 위험이 통계적 추정치인 점과 예상하지 못한 시장 환경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산군별 허용범위 설정

* 중장기자금규모: 2012년 여유자금 3,127억원(예상)의 88%수준(2,749억원)

8.6 자산배분안 재조정

-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 비중을 재조정한다.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9.1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정책

- 기금의 자산운용은 전담인력을 통한 내부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관이나 기획재정부 주관 연기금투자폴 등에 위탁 운용할 수 있다.
- 집합투자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9.2 외부위탁투자기관

- 외부위탁투자기관은 연기금투자폴, 은행권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은행권 금융기관

- ①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 ②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③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집합투자기관

- ①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금융 투자회사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집합 투자업자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투자 자문업자

9.3 외부위탁 투자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 구체적인 외부위탁 투자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연간자산운용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 외부위탁투자기관은 제1단계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수익률,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 각 기금운용수익률 또는 운용사 실적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제2단계로 제1단계에서 선정된 위탁기관들로부터 자산운용상품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익률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다. 다만, 기금의 규모가 작고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연기금 투자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 위탁대상 시중은행은 예탁일 기준 동일 예탁기간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제시수익율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판매사(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익증권 판매량, 자산부채 비율, 총자산이익률, 운용성과(수익률) 등의 지표로 평가하여 선정 하고,

- 운용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익증권 판매량, 운용성과(수익률) 등의 지표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 운용기법의 변경 요구 및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위탁운용사의 계약 위반 시 해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금운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0

위험관리 정책

10.1 위험관리 원칙

- 자산운용 수익은 위험에 대한 관리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서 자산운용이 각종 관련법령 및 지침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등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 펀드메니저들이 투자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투자하였는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감시·감독하는 업무활동

- 기금자산의 위험관리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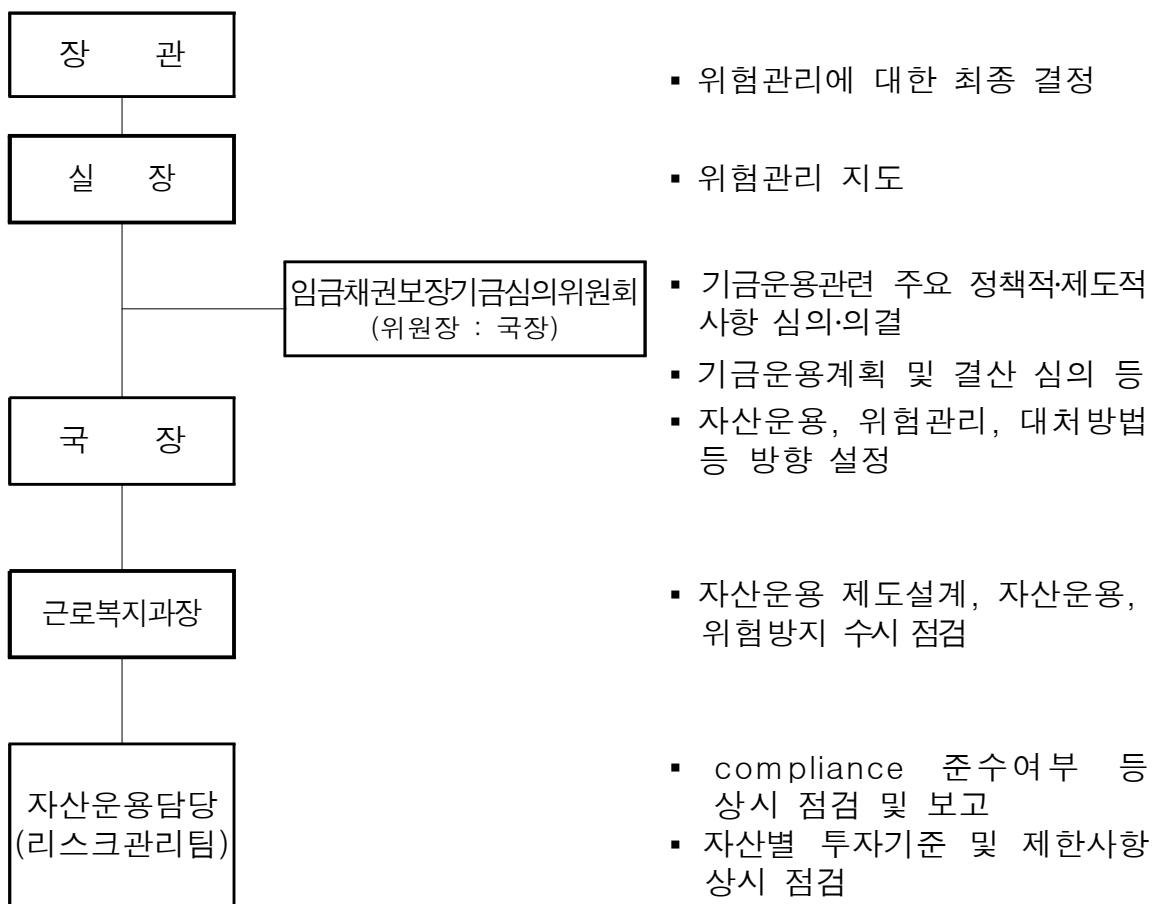
10.2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 위험의 종류 및 절차
 - 자산의 관리·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크게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및 자산·부채위험으로 나누어 측정 및 점검한다.
 -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이다.

- 관리방법 : shortfall Risk ≤ 5%로 통제하고, 시장위험(Var)을 일별/월별로 측정하여 관리한다.
-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 채권 발행사의 부도나 워크아웃 또는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 등의 위험이다
 - 관리방법
 - 채권 : A⁻이상, CP : A⁻이상 등
 - 주식 : 발행주식수의 5/100이내, 보유주식 총액의 10/100이내 등
 - ※ 구체적인 기준은 연간 자산운용 계획에 따른다.
- 유동성위험은 예측치 못한 자금집행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 관리방법 :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95% 신뢰수준하에서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산출한다.
- 운영위험은 시스템 오류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을 입히거나 기금의 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말한다
 - 관리방법: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 제도나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오류 등을 점검한다
- 자산·부채위험(ALM Risk)은 기금자산을 이용하여 기금의 목적 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위험이다
 - 관리방법: 적정 자산대비 부채 규모를 유지한다
- 위험측정 기준 및 활용
 - 자산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리스크의 통제 및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실시한다.

- 자산운용에 대한 위험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외부전문기관(펀드평가사, 사무수탁사)을 통하여 측정 및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기금 투자폴에 위탁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0.3 위험관리 체계도



11

성과평가

11.1 성과평가의 목적

- 성과평가는 일련의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진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11.2 성과평가의 원칙

- 성과평가는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도 고려하되, 외부 전문기관(펀드평가사 등)에서 수행한다.
-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자산운용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운용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평잔수익률을 사용한다.
- 평가 결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근로개선정책관)에게 보고하고 주요사항은 자산운용에 반영한다.

11.3 성과평가 기준: 기준수익률

- 운용성과의 평가지표가 되는 기준수익률은 운용기간별 · 운용상품별 대표상품을 사전적으로 설정한다.

《기준 수익률 설정》

구분		기준수익률	운용기간	비 고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	MMF수익률	1개월 미만	한국은행
	유동성자금	CD91일물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한국은행
		정기예금 6개월~1년 수익률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한국은행
중장기 자금	확정금리	기간별 정기예금 평균수익률+ 기관우 대 평균금리	1년 이상	한국은행
	채권	잔존만기별 채권지수 수익률		채권평가사
	주식	KOSPI 수익률		한국거래소
	대체투자	상품별 대표지수		지수발표기관
집합상품투자		상품별 기준수익률		운용기관

12

감사 및 공시

12.1 감사 및 공시 정책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감사

- 감사관실은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운용에 관한 공시

- 기금의 운용내역 및 성과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공시한다.

- 1) 공시내용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기금적립 현황,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기금 운용수익률, 자산운용지침(IPS) 등

13

주식투자 시 의결권 행사

13.1 기본원칙

- 의결권은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에 있어 기금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사한다.

13.2 행사기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조에 의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3.3 행사방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은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수에서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한다
- 다만,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객관적 지표와 사실에 근거하여 반대 의사 표시를 행한다.

13.4 공시 등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7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은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을 공시한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 :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사항 :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등

- 간접투자자인 기금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이 의결권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한 때에는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다.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13.1 행위준칙

- 자산운용담당자(이하 “담당자”)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1) 담당자는 관계법령, 자산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자로서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담당자는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3)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4) 담당자는 기금이 도산사업장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5) 담당자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 최대화 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발생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별지 1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

(2010.9.4~2013.9.3)

(2011.6.1 현재)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E-mail
공익위원	박 종 길	근로개선정책관
	하 형 소	근로개선정책관 근로복지과장
	김 동 원 (金 東 元)	고려대학교 경영대교수 dokim@korea.ac.kr
	신 은 종 (申 殷 宗)	단국대학교(죽전) 상경대 교수 eshin@dankook.ac.kr
	전 선 애 (田 善 愛)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sechun@cau.ac.kr
근로자위원	백 영 길 (白 英 吉)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kfiu100@hanmail.net
	유 영 철 (劉 永 徹)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chul7295@hanmail.net
	이 정 식 (李 正 植)	한국노총 사무처장 winwinmaker@empal.com
	강 규 혁 (康 圭 赫)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kkh0010@lycos.co.kr
	정 희 성 (鄭 僖 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0116262693@naver.com
사용자위원	김 동 욱 (金 東 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dream21@kef.or.kr
	백 양 현 (白 陽 鉉)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byh@kbiz.or.kr
	박 종 남 (朴 宗 男)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상무이사) jnpark@korcham.net
	조 순 조 (趙 順 祚)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회장 ironcho52@hanmail.net
	안 종 현 (安 鍾 賢)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장 ajh@fki.or.kr

< 별지 2 >

자산운용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설치목적**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금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근로복지과장
- 위 원
 - 당연직위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담당사무관
 - 위촉직위원(3명)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위 경우	숙명여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2010.5.4 ~ 2012.5.3
이 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
김 주훈	노아에이티에스(주) 이사	"

□ **주요자문사항**

- 자산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여유자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사항**

-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지급